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6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정춘생·이해민·김준형

박은정 · 김재원 · 김선민

조 국・강경숙・황운하

신장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여 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 및 영상물 시청에 대한 법정 제재가 없어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감을 초래할 때도 처벌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의 준수 사항에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 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 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을 "제2항을"로 한다.

- 1. 흡연하는 행위
- 2.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3.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불쾌감을 주는 행위

제91조제1호 중 "제27조의2제3항을"을 "제27조의2제2항2호를"로 한다. 제9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용 자동차 안에서 <u>흡연하여서</u>	<u>다음 각 호</u>
<u>는 아니 된다</u>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1. 흡연하는 행위
<u><신 설></u>	2.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u> 주는 행위</u>
<u><신 설></u>	3.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u><삭 제></u>
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	
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	
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u>서는 아니 된다.</u>	
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	④ <u>제2항</u> 을
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	
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	
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	
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2. ~ 7. (생 략) 제92조(벌칙) (생 략)

<신 설>

,
1. 제27조의2제2항제2호를
2. ~ 7. (현행과 같음)
제92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27조의2제2항제3호를 위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
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5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